

[공고 정-2020-제11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1년 상반기 약무직 채용공고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2021년 상반기 약무직 채용을 진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 1. 모집분야 및 인원 등 ... [따로붙임1] 직무설명자료 참조

직종	직급	분야	인원	응시자격
약무직	5급	약사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사 면허증 소지자이거나,</li> <li>▫ 2021년 약사 면허증 취득 예정자</li> </ul>

#### 응시자격 및 지원에 관한 공통사항

- 1) 응시원서 작성 중 면허(자격)증, 교육경력사항 등 일체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면허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 전 반드시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4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2) 각 채용 직종, 직급 및 동일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확인시 ‘자격미달’ 처리함
  -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기재 항목 수정 등을 이유로 다시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중복 지원으로 간주 (최종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수정·삭제 절대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 ※ 단, 공개경쟁 지원자가 추후 특별채용(보훈, 장애인 등) 대상자로 추천되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 분야 한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포기 각서’를 제출
- 3) 모집분야별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분야별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4)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직권면직 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응시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 등 기재 불량자(미기재자 포함)는 ‘자격미달’ 처리하고, 허위기재한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

- 5)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따라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 받은 서류 여야 하며, '증빙서류 등록기간' 에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로 탈락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요망
  - 일산병원은 직무역량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 정보(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를 일절 요구하지 않음 ... 적발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로 처리
- 6)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성범죄 경력자(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7)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자

## 2.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상근 근무 ... 일 8시간, 주 4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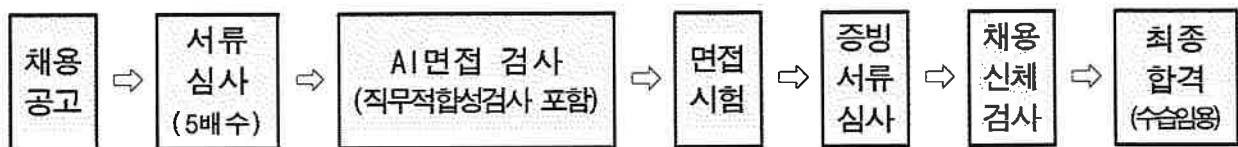
※ 세부적인 근무시간은 부서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복리후생

- 가족수당 지급 및 자녀학자금 지원
- 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장기근속수당 지급(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매월 식대보조비(중식, 야간 및 연장근무자용 식비) 지급
- 임신직원 보호용품 및 출산장려금 지급
- 휴양시설(콘도 등) 운영
- 복지포인트 및 기숙사 제공
- 직장어린이집 운영
- 문화행사(영화관람, 야구경기 관람 등) 운영 등
-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3. 전형절차 및 일정 ... 공개경쟁선발

○ 전형절차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자격 부여



## ○ 전형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0.9.29.(화)~10.13.(화) 17시	▣ 병원 채용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0.10.21.(수)~10.23.(금) 사이	▣ 병원 채용 홈페이지 안내 - AI검사 및 면접시험 관련
▣ AI면접 검사	2020.10.26.(월)~10.28.(수) 사이	▣ 온라인 검사 - 직무적합성검사 포함
▣ 증빙서류 등록	2020.10.26.(월)~10.28.(수) 사이	▣ 증빙서류 온라인 등록
▣ 면접시험	2020.11.17.(화)~11.20.(금) 사이	▣ 일산병원내 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1.23.(월)~11.24.(화) 사이	▣ 병원 채용 홈페이지 안내
▣ 채용 신체검사	2020.11.25.(수)~11.26.(목) 사이	▣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 전 실시
▣ 수습임용(예정)	2021.3.1.부	-

※ 각 전형별 모든 일정 및 장소는 병원 운영상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중 응시자가 없거나 최종결과 모집인원에 미달 시, 병원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총원시까지 상시공고 전환 추진 가능

### 전형단계별 평가내용

- 1) (서류심사) 응시자격 요건 확인, 입사지원서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분야 관련 교육·훈련 및 경력 등을 평가
  - ※ 채용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포함하여 운영
- 2) (AI면접 검사) 개인역량 및 성향 테스트검사, 심층질문, 상황대응질문 등을 통해 채용 분야별 직무역량에 대해 종합적으로 온라인시스템 평가
- 3) (면접시험) BEI(경험행동면접)를 기반으로 전문 지식 및 업무수행 능력, 인적성, 병원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평가
  - ※ 채용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포함하여 운영
- 4) (증빙서류심사) 입사지원서 허위 기재 및 오기재 여부 확인
- 5) (채용신체검사) 일산병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충족 여부 검사(각종 질환검사 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준용)
  -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근무자로서 감염관련 항체검사(수두, 풍진, A, B형 간염 항체 검사) 및 흉역검사 실시

○ 우대사항(가산점)

구분	우대자격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로 확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공고시점부터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장애인(등록) 자격 유지자
일산병원 비정규 직원 근무경력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일산병원 비정규 직원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자로서 근무평가 총점이 8할 이상인 자

- ※ 가산점 적용 점수는 일산병원 「인사규정」 등의 기준에 따름
- ※ 기타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은 가점 미부여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예정) : 2020.9.29(화) ~ 10.13(화) 17:00(15일간)
- 접수방법 : 일산병원 채용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24시간 접수가능
  -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 채용홈페이지 주소 : <https://nhimc.recruiter.co.kr>
- 증빙서류 등록(또는 제출) 기간 : 채용 전형일정 참조
  - ※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의해 증빙서류를 등록(또는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등록 시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
  - ※ 학교명, 사진 등 차별적 요소 및 개인정보에 대해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블라인드 처리 후 등록(또는 제출)

5. 응시자 증빙서류 등록

- 대상 : 면접전형 응시대상자 ... 증빙서류 미등록자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등록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기준 증빙서류

###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남성에 한함
- 면허증, 자격증, 이수증 등 ... 해당자에 한함(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확인)
- 성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확인)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확인)
- 장애인 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입사지원서에 기재사항 확인)

#### ○ 제출방법 : 증빙서류 스캔 후 압축하여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 학교명, 사진 등 차별적 요소 및 개인정보에 대해 지원자 본인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 채용홈페이지(<https://nhimc.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 ○ 제출시기(예정) : 직무적합성 검사 기간 ... 별도 안내

#### ○ 응시원서 검증 :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및 오기재 여부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처리되어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6.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제출시기 :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제출 ... 별도 안내

####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필수) 1부

- ※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추가 제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필수) 1부

- ※ 편입자의 경우 편입전 대학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응시일 현재 군복무자에 한함) 1부 ... 남성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 경력(재직) 증명서상에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통장사본 1부

## 7. 참고사항

- 일산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소 (성별, 연령, 학력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고, 유추 가능한 정보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음
  - 따라서 지원자는 입사지원서에 성별, 연령, 학력 관련 사항을 기재 하거나 유추 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로 간주될 수 있음
    - ※ 예) 성별 관련: 군경력 중 병사로서 경험 등 의무복무에 관한 사항 기재 등
    - 학력 관련: 대학교, 대학원 명칭 기재 등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허위사실 기재, 전형 필수항목 불성실 기재(교육사항 입력개수 미달, 경력사항 기관명 미기재, 자기소개서 내용 미작성 등), 비속어 사용, 무의미한 단어 반복, 타인과 동일한 기재내용 또는 기재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함
  - 입사지원서 허위사실 기재, 허위증빙서류 제출 또는 시험 중 부정 행위자는 당해 합격 또는 임용 취소(추후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응시자격 미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됨
  - 입사지원서 작성 중 면허(자격)증, 교육 및 경력사항 등 일체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임
    - ※ 예) 타 기관 재직 중인 응시자의 경우 경력기간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산정
-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 전형 관련 사항은 일산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지원자의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일산병원의 개인정보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채용 신체검사에서 부적합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됨

- 2021년 약사 면허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별도의 안내에 따라 임용 전 면허 취득사실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할 시 임용 취소 됨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요청에 따라 반환 할 수 있음
- 인사규정 제9조(수습임용)에 따라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정규직으로 임용되며, 평가 불량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6조(수습직원)에 따라 면직할 수 있음
  - 해당 분야 경력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수습임용 기간 동안 연봉의 8할 지급
  - 수습임용일은 2021.3.1.부 예정
- 신규채용자의 등급(호봉)은 우리 병원 인사규정에 따라 경력기간을 환산하여 산정하되, 5급 임용자는 13등급(호봉)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원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전형별 사전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정변경과 관련하여 사유발생시 병원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안내 예정
- 응시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공고 및 응시원서 작성가이드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전화문의 이전에 채용사이트의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문의 >

□ 문의시간 및 연락처 : (평일) 09:00~11:00, 14:00~16:00

(연락처) 031-900-0046, 0051~0053

※ 주말이나 공휴일, 문의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따로붙임 1】 직무설명자료

## 직무설명자료(약무직)

채용분야	▣ 약무직
기관 주요업무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수가관련 연구, 적정진료수준 제시, 정부 정책사업 수행, 공공의료사업 등 건강보험 모델병원 운영 관련 제반 업무
능력단위	▣ 관련법령에 의거 병원 입원 및 외래 환자에 대한 약 조제 등
직무수행 내용	▣ 입원환자의 약 처방에 대한 감사, 조제, 검수, 투약, 복약상담 업무 ▣ 응급실 및 외래 원내조제 환자에 대한 약 처방 감사, 조제, 검수, 투약, 복약상담 업무 ▣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주사제 처방 감사, 조제, 복약상담 업무 ▣ 임상약동학, 부작용모니터링, 약물정보 제공 등의 약제 서비스 업무 등
전형방법	▣ 서류전형 → AI 검사(직무적합성검사 포함) → 면접 → 증빙서류심사 → 채용 신체검사 → 수습임용
교육요건	▣ 약학 관련 기본교육 및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 법규 등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필요지식	▣ 질병에 대한 약물치료학 지식 ▣ 의약품의 작용기전, 효능·효과, 용법, 용량 등 약물학적, 약제학적 지식 ▣ 임상약동학, 부작용평가, 영양요법, 주사제무균조제 이론, 정보 및 문헌검색 지식 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규 지식(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등)
필요기술	▣ 약물사용의 적정성 평가 능력 ▣ 항암주사제 등 무균 조작 능력 ▣ 약국 전산 프로그램 이해 및 활용 능력 ▣ 조제 장비 등 기기 관리 능력 ▣ 약물정보 자료 수집 및 관리 능력
직무수행 태도	▣ 관련 규정 준수 및 업무 일정 계획 준수, 환자 및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태도 ▣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직업윤리
필요자격	▣ 약사 면허증 소지자이거나, ▣ 2021년 약사 면허증 취득 예정자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 대인관계, 조직이해능력 및 직업윤리



## 【따로붙임 2】

**관련 규정 및 법률**

▣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9.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4.12.24>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4.12.24.>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0.1.>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0.1.>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12.24.>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8.9.27., 개정 2019.10.1.>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18.9.27.>

1.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2.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인사규정 제84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9., 2012.12.21.>

1. 의사직 - 65세
2. 연구직,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학물리학직 - 60세 <개정 2015.12.24.>
3. <삭제 2015.12.24.>
-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말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 다만, 의사직의 경우는 3월에서 8월 사이는 8월말일에, 9월에서 익년도 2월 사이에는 익년도 2월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0.11.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